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112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지역주택조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백상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10. 1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광주시 E 답 149㎡ 중 60㎡ 및 F 전 284㎡ 중 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대금 9,107만 원에 매수하고, 위 건물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3,89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0. 14.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주식회사 G을 통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1억 3,000만 원(토지 매매대금 9,107만 원에 건물 보상금 3,893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고, 2016. 11. 24.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매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광주시 H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4. 13. 광주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망인이 아닌 I의 소유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경 I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6120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9. 6. 3. '은 원고에게 2019.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중략) 원고는 2019. 7. 31.까지 I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21.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를 포함한 총 6명의 자녀들이 있다. 피고는 2021. 6.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지분을 이전하고 남은 잔여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의 보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3,893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망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3,893만 원 및 약의의 수익자인 망인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을 지급받은 날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법정상속분인 1/6 비율에 해당하는 6,488,333원(= 3,893만 원 × 1/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6,488,333원 및 이에 대한 위 2016.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잔여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도 피고가 전부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각 토지 지분을 협의분할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는 별개로 망인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자신의 상속분인 1/6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원고가 I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을 도와주고, 당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망인이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0만 원을 반환하고 건물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였던 L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 소외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L은 망인에게 2,000만 원을 위 회사에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망인이 2016. 11. 28.경 2,000만 원을 위 회사에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와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두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경